

장쑤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권리보호 안내

(2021버전)

1. 설명

외자기업이 장쑤성에서 특허 및 상표 등 지적 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권리 보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안내를 작성한다. 본 안내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은 주로 중국 대륙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특허권, 상표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및 저작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지적 재산권(예를 들어 식물 신품종, 상업 기밀 등)에 대해서는 본 안내 설명하지 않으며 기업이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2. 특허

2.1 출원 유형

특허 출원은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품, 방법, 또는 그의 개선을 위해 제기한 새로운 기술 수단에 대하여 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제품의 외관, 구조 또는 그의 조합에 위해 제기한 새로운 기술 수단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제품의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외관, 도안 또는 그의 조합 및 색채와 외관, 도안의 결합에 따른 미감 풍부하고 공업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하여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2.2 출원 절차

(1) 출원서류 준비

발명특허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류에는 발명특허 출원서, 권리요구서, 설명서(필요 시 설명서 부도 제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용신안특허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류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서, 권리

요구서, 설명서, 설명서 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디자인 특허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류에는 디자인 특허 출원서, 이 디자인의 그림이나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색채 보호를 청구할 경우에 컬러 그림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허대리 의탁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출원서류 제출

특허 출원서류는 종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류는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접수처(이하 "국가국 접수처"로 약칭)에 제출하거나,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각지에 설치된 특허대행처(이하 "대행처"로 약칭)에 제출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은 장쑤성에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난징대행처와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난징대행처 쑤저우분리처를 설치했다. 특허 전자 출원은 중국 특허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cponline.cnipa.gov.cn>)를 접속하여 스스로 등록하고 로그인한 후에 이용 가능하다.

(3) 출원수리통지서

국가국 접수처 또는 대행처는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접수조건에 맞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일자를 확정하여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출원수리통지서를 발송한다. 전자 출원은 보통 출원 제출 후 24 시간 이내 출원수리통지서를 발송하고 종이 출원은 작업일 기준으로 4일에 출원수리통지서를 발송하는데, 마감시한을 넘겨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즉시 조회해야 한다.

2.3 출원일자의 확정

특허 출원은 선출원 원칙을 채용하며 출원일자의 선후가 특허권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특허 출원 서류를 전자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일은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를 종이식으로 직접 대면 제출하는 경우에 출원일자는 국가국 접수처 또는 대행처에서 출원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출원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우편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를 다른 경로를 통해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국가국 접수처

또는 대행처에서 문서를 받은 날짜로 출원일자가 된다.

2.4 특허권의 기간

발명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15년이며 모두 출원일자로부터 한다.

2.5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국 접수처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며 등록부서에서 심사하여 합격한 후 이를 공고한다.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6 특허권의 중지

특허권 중지는 정상 종료와 비정상 종료로 구분된다. 정상종료란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상종료란 특허권이 존속기간 내에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특허권이 조기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비정상 종료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정대로 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특허권자가 서면 성명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점 등이 있다.

3. 상표

3.1 등록 유형

현행 상품과 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제 11판 니스 분류의 체계, 내용과 규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상품 서비스 실태에 따라 중국 특색의 상품과 서비스 항목명칭 일부(접수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항목 명칭은 중국 상표 사이트 "<http://sbj.cnipa.gov.cn/>" 상표 조회란과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온라인으로 조회와 기입이 가능하다)를 추가했다.

3.2 등록 절차

(1) 조회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국(이하 "국가국 상표국"으로 약칭) 홈페이지(인터넷주소는 위의 "중국 상표 사이트"와 같음)의 "상표 온라인 조회"란

에서 동일하거나 근사상표가 선행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2) 출원서류 준비

상표등록 출원은 사업자등록증(부분) 복사본, 등록할 상표의 전자도안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원본과 스캔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등록 업무 처리

출원인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상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국 상표국 홈페이지에 있는 "상표 온라인 출원" 란에 신규 가입자를 등록하고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각 상표 업무의 출원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관련 서류를 휴대하고 국가국 상표국의 상표접수 창구로 가서 출원하는 방식이고 지방상표 접수창구는 출원인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출원인의 셀프 출원을 지도할 수 있다. 셋째는 수탁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 출원 대행하는 방식이며 대행 기관은 출원인이 작성한 상표명이나 그래픽, 조합상표 등을 검색 및 조회하여 판단하고 상품 서비스 카테고리 선택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과 제안을 한다.

4.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출원인이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 국가국 상표국이 심사를 하며 형식이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 전자판 납부통지서를 출원인이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직접 발송하고 동시에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출원인에게 문자 알림을 한다. 출원인은 국가국 상표국 공식 사이트에서 일반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셀프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출원서를 제출하는 상표 접수창구에 가서 납부할 수 있다.

(5) 출원수리통지서

출원인이 기한 내에 접수한 상표의 등록비 낸 후에 국가국 상표국이 전자식 출원수리통지서를 출원인이 기입한 전자 메일 주소로 직접 발송하고 동시에 기입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출원인에게 문자 알림을 한다.

3.3 상표 출원일자의 확정

상표 출원은 선출원 원칙을 채용하며 출원일자의 선후가 상표권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상표등록 출원의 출원일은 국가국 상표국이 상표등록

출원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4 상표권의 기간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이 승인 받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등록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번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상표의 지난 존속기간 만료일의 차일로부터 계산된다.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상표권은 말소된다.

3.5 상표권의 양도

등록상표는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국가국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도할 등록 상표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후에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한 날부터 상표 전용권을 가진다.

3.6 상표권의 종료

상표권의 종료에는 말소종료와 취소종료가 있다. 말소종료이란 등록상표권자가 자동적으로 등록상표 사용을 포기하여 등록상표에 말소 신청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 후 등록상표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말소된 것을 말한다. 취소종료이란 등록 상표권자가 상표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고 상표권은 강제로 종료된 것을 말한다.

4.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4.1 등록범위

집적회로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함)는 집적회로 중 적어도 하나는 능동형 부품이 포함된 둘 개 이상의 부품 및 일부 또는 전체의 상호 연결 라인의 3차원 배치나 집적회로의 제조를 위해 준비된 위와 같은 3차원 배치가 의미한다.

4.2 등록 절차

(1) 준비서류

배치설계 등록 출원서류: 배치설계등록출원서, 도면, 도면의 목록.

배치설계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상업적으로 사용된 경우 등록을 출원할 때 4개의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등록 대리 의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출원서류 제출

배치설계 출원서류는 종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원서류는 국가 지적재산권국 접수처 또는 배치설계 접수 업무를 개시한 대행처에 제출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난징대행처와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난징대행처 쑤저우분리처는 이 접수 업무를 개시했다. 배치설계 등록 전자 출원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자 출원 플랫폼(<http://vlsci.cnipa.gov.cn/>)을 방문하여 셀프 등록 및 로그인(중국 특허 전자 출원 등록 사용자는 바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음) 후 사용할 수 있다.

(3) 출원수리통지서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류가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심사를 한 후 수리 조건이 충족되고 형식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수리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다. 수리 조건이 충족되지만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수리통지서와 보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이 보정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정을 통해 모든 하자가 없앤 경우에는 심사관이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다. 수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불수리통지서를 발송한다.

4.3 출원일자의 확정

출원서류를 전자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일은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를 종이식으로 직접 대면 제출하는 경우에 출원일자는 국가국 접수처 또는 대행처에서 출원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출원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우편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를 다른 경로를 통해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국가국 접수처 또는 대행처에서 문서를 받

은 날짜로 출원일자가 된다.

4.4 배치설계 독점권의 기간

배치설계 독점권의 보호 기간은 배치설계 등록을 출원일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최초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날 중 빠른 날짜로부터 10년이다. 다만, 등록 여부 또는 상업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배치설계는 생성 완료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보호되지 않다.

4.5 배치설계 독점권의 양도

배치설계 권리자는 그의 배치설계 독점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지적재산권국 접수처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며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이를 공고한다. 배치설계 독점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6 배치설계 독점권의 종료

배치설계 독점권의 종료는 정상 종료와 비정상 종료로 구분된다. 정상 종료는 보호기간 만료로 배치설계 독점권이 종료되는 것이며, 비정상 종료는 보호기간 동안 서면으로 배치설계 독점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5. 저작권

5.1 등록범위

저작권 등록 범위에는 문자 작품; 구술 작품; 음악, 연극, 곡예, 무용, 잡기 예술 작품; 미술, 건축 작품; 촬영 작품; 시청각 저작물;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설명도 등 도형 작품과 모형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특성에 맞는 기타 지적 성과물이 있다.

5.2 등록 절차

(1) 준비서류

작품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인 신분 증명문서 사본(개인의 경우 신분증 앞뒷면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본인 사진이 필요하며 조직의 경우 본 조직의 공인을 찍은 해당 증거 서류 사본이 필요하다); 권리 귀속 증명 문서; 작품의 견본(전자 매질의 작품 견본을 제출함).

(2) 등록 신청

작품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장쑤성신문출판국(장쑤성 판권국) 포털사이트 (<http://www.jssxwcbj.gov.cn>)에 접속하여 "대민 서비스", "온라인 처리", "장쑤성 작품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차례로 클릭한다. 첫 로그인 시 실명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완료 후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한다.

(3) 등록 심사

등록기관은 작품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신분 심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고 서류 심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30일이고 심사기간은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완전하고 합격한 신청등록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심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4) 등록증 발급 및 공지

심사를 거쳐 규정에 적합한 경우, 작품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출원인은 이를 출력하거나 공식 종이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 등록증과 공식 종이 등록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5.3 등록 정보 변경

작품 저작권 등록 정보의 일부는 변경할 수 있고 이는 작품 명칭, 작품 분류, 저작권자 명칭이 포함된다.

5.4 작품 등록증의 취소

작품 등록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증을 취소한다.

(1) 등록 후 "작품 자원 등록 시행 방법" 제5조에 규정하는 상황을 발견된 경우;

(2) 등록 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출원인이 원 작품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등록 후 중복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5 작품 등록 기록 조회

작품 등록이 완료된 후 출원인이 저작권 권리보호, 저작권 거래, 소송 발

생, 기업 상장 등으로 인해 등록 기록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경우 작품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록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6.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 당한 경우 권리보호 방법

상대방이 자신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권리보호를 취할 수 있다.

6.1 권리보호 팀 조직

해당 지적재산권에 익숙한 기술자나 창작자와 지적재산권 법률에 능통한 전문인원 등을 선택해 권리보호 팀을 조직한다.

6.2 증거 수집

- (1) 본 기업의 주체 자격 증명;
- (2) 본 기업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증명;
- (3)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한 증거;
- (4) 상대방의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 증거.

6.3 분석평가 실시

- (1)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권리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평가한다;
- (2) 수집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상대방 침해 구성하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장쑤성 성내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6.4 권리보호 수단 선택

(1) 협상 해결.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 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상대방이 존재하는 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협상일치한 경우 서면 합의서를 작성한다.

(2) 제3자 기관 조정. 장쑤성 지적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장쑤판권 조정센터, 장쑤(난징) 지식재산권 중재 조정센터 등 제3자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중 조정을 통하여 쌍방이 자발적인 협상을 기초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한다.

(3) 중재 신청. 상대방과 소통하여 중재 협약을 체결하고 중재 협약에 의거하여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4) 행정 신고. 관할권이 있는 지적 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5) 사법 소송.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거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대해 재산 보전을 판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 시 또한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전 조치를 취하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 기각을 판결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아드린 후 긴급 상황인 경우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정하는 경우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7.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로 고발된 경우 권리보호 방법

타인 지적재산권의 권리 침해로 고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권리보호를 취할 수 있다.

7.1 대응 팀 조직

고발된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작품(제작물)이나 기술에 익숙한 연구 개발인원이나 창작자와 지적재산권 법률에 능통한 전문인원 등을 선택해 대응 팀을 조직한다.

7.2 응소 증거 준비

- (1) 기업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증거;
- (2) 기업이 고발된 제품 또는 기술의 적법한 출처 증거;
- (3) 기업이 고발된 제품 또는 기술의 권리 미침해 증거;
- (4) 상대방의 권리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증거;
- (5) 권리 침해를 구성되지 않는 기타 증거.

7.3 분석평가 실시

- (1) 상대방이 지적 재산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조회한다;
- (2)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의 법적 상태 및 권리내용을 조회한다;
- (3) 특허권이 있는 경우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상대방 권리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4) 고발된 제품, 작품(제작물)이나 기술을 상대방의 권리내용과 비교 분석한다;
- (5) 법적 및 기술적 등 측면에서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장쑤성 성내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관 도움과 복무를 제공하기를 요청한다.

7.4 분쟁에 적극 대응

(1) 상대방은 경고장을 보내온 경우, 주동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소통하며 협상해서 해결하기를 노력한다.

(2) 자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과 소통하고 장쑤성 지적 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 장쑤 판권조정센터, 장쑤(난징) 지식 재산권 중재 조정센터 등 제3자 조정기관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한다.

(3) 자체 협상, 제3자 조정 모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주동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여 중재 협약을 체결하고 중재 협약에 의거하여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지적 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에 청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소한다. 행정처분이나 사법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실태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지적 재산권 소유권분쟁 혹은 인센티브, 보수 분쟁의 권리보호 방법

지적 재산권 소유권 분쟁 혹은 인센티브, 보수 분쟁 발생할 경우, 기업은 장쑤성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 장쑤 판권조정센터, 장쑤(난징) 지

식재산권 중재 조정센터 등 제3자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관할권이 있는 지적 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안 될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장쑤성 지적재산권 사법, 행정 및 권리보호 서비스

장쑤성 행정구역 내 관할권이 있는 법원, 지적 재산권 행정관리 부서, 조정기관, 중재기관, 특허 대행처, 지방상표접수창구, 지적 재산권 보호센터, 신속 권리보호센터,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등 방면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첨부 문서 참조, 단 첨부에 한하지 않음):

2021

장쑤성 지적재산권 사법, 행정 및 권리보호 서비스 자원 리스트

1. 장쑤성에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권이 있는 법원

번호	관할구역에 관할권이 있는 중급 법원	관할구역에 관할권이 있는 기층 법원	각 임안정(立案庭)의 상담 전화
1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현무; 건업; 강녕; 우화대; 강녕개발구, 강북신구(고루, 육합 동시 관할)	12368
2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호구, 공업단지, 곤산, 태창, 상숙, 오강, 장가항	12368
3	우시시 중급인민법원	빈호, 신오, 강음, 의흥	12368
4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신북, 천녕, 무진, 종루	12368
5	난통시 중급인민법원	통주(계동, 해안, 여고 동시 관할)	12368
6	전장시 중급인민법원	경제개발구, 단양	12368
7	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광릉, 고우, 의정	12368
8	연청시 중급인민법원	정호, 대풍	12368
9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의약고신구, 정강	12368
10	취저우시 중급인민법원	동산구	12368
11	렌원강시 중급인민법원	없음	12368
12	화이안시 중급인민법원	없음	12368
13	쑤첸시 중급인민법원	쑤성구	12368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사건, 해상 상업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정보 네트워크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행위 실시로 피소된 컴퓨터 등 정보 설비 소재지를 포함하고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소지가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12368로 전화문의를 할 수 있다.

2. 장쑤성, 시 지적재산권국

번호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인터넷주소
1	장쑤성 지적재산권국	난징시 한중문거리 145번지 장쑤성 정부서비스센터 2차 6층	210036	025-83279963	http://jsip.jiangsu.gov.cn/
2	난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난징시 주강로 696번지 발전빌딩	210018	025-84648980	http://amr.nanjing.gov.cn/
3	우시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우시시 영화로 28번지	214023	0510-81009071	http://scjgj.wuxi.gov.cn/
4	취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취저우시 운룡구 신안로 11번지	221018	0516-83727616	http://scjgj.xz.gov.cn/
5	창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창저우시 신북구 태호동로 105번지	213000	0519-88588200	http://scjgj.changzhou.gov.cn/
6	쑤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쑤저우시 고소구 평룡로 188번지	215000	0512-69821466	http://scjgj.suzhou.gov.cn/
7	난통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난통시 송천로 106번지	226000	0513-69818195	http://scjgj.nantong.gov.cn/
8	렌원강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렌원강시 고신구 진화동로 18번지	222006	0518-85681686	http://scjgj.lyg.gov.cn/
9	화이안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화이안시 남창북로 502번지	223001	0517-80877110	http://scjgj.huaian.gov.cn/
10	옌청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재산권국)	옌청시 해방남로 138번지	224005	0515-89029417	http://scjgj.yancheng.gov.cn/

번호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인터넷주소
11	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지적재산권국)	양저우시 광릉구 염부서로 16번지	225002	0514-87329740	http://scjgj.yangzhou.gov.cn/
12	전장시 시장감독관리국(지적재산권국)	전장시 윤주구 단산로22번지	212000	0511-85037932	http://scjgj.zhenjiang.gov.cn/
13	타이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지적재산권국)	타이저우시 해릉구 해릉남로 315번지	225300	0523-86608818	http://scjgj.taizhou.gov.cn/
14	쑤첸시 시장감독관리국(지적재산권국)	쑤첸시 흥택호로 583번지(원 질량기출감독국)	223800	0527-84359200	http://scjgj.suqian.gov.cn/

3. 장쑤성 지적재산권 분쟁조정기구

번호	조정기구 명칭	주소	전화	연락처
1	장쑤성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장쑤성 난징시 건업구 한중문거리 145번지 장쑤성 정부서비스센터 2차 6층	4008869661	짱옌(蒋燕)
2	장쑤(난징) 지식재산권 중재 조정센터	장쑤성 난징시 건업구 한중문거리 145번지 장쑤성 정부서비스센터 2차 2층	025-83236250	손멍(孙萌)
3	우시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우시시 양계구 영화로 28번지 우시시 지적재산권국 1411	0510-81009032	류화(刘华)
4	창저우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창저우시 과교성 천운과학기술빌딩 C라인 5층	0519-89857966	화원송(华文松)
5	쑤저우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쑤저우시 공업단지 금계호대로 1355번지 국제과학기술원 3차 8층	0512-88182710 18015815811	텐에(田野)
6	화이안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화이안시 남창북로 502번지	13405502003	옌수칭(严树青)

번호	조정기구 명칭	주소	전화	연락처
7	양저우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양저우시 염부서로 18번지	18005276680	첸징이(陈菁逸)
8	전장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전장시 남서대로 62-2번지 상무B빌딩 1021실	18261963156	펑홍홍(彭红红)
9	타이저우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타이저우시 해릉구 해릉남로 315번지 타이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3층 본관 316실	13815952968	저우원(周雯)

4. 장쑤성 판권 분쟁조정기구

번호	조정기관 명칭	주소	전화
1	장쑤 판권 분쟁조정센터	난징시 진회구 수서문거리 2번지 3층 장쑤성 판권 협회 비서실 난징시 구로구 고운령 56번지 별관 301실	025-87769375 전8013 025-87769379,87769265

5. 장쑤성 중재기구

번호	명칭	주소	사건 등록 상담 전화
1	난징 중재위원회	난징시 구로구 광주로 189번지 민방빌딩 25층	025-84721682
2	우시 중재위원회	우시시 문화로 199번지 8층	0510-82730848
3	취저우 중재위원회	취저우시 천산구 시안남로 122-2번지 4층	0516-83734982
4	창저우 중재위원회	창저우시 천녕구 노동중로 218번지	0519-81289667
5	쑤저우 중재위원회	쑤저우시 고소구 봉황길 334번지	0512-65229313
6	난통 중재위원회	난통시 승문로 2번지 도서관 종합서비스센터 12층	0513-59002752
7	렌윈강 중재위원회	렌윈강시 해주구 창오로 36번지 1동 3층	0518-85800356
8	화이안 중재위원회	화이안시 경제개발기술구 심천로 34번지	0517-83320411
9	옌청 중재위원회	옌청시 정호구 육룡동로 17번지	0515-866663121

번호	명칭	주소	사건 등록 상담 전화
10	양저우 중재위원회	양저우시 광릉구 강도로 51번지	0514-87158003
11	전장 중재위원회	전장시 정동로 34번지 8층	0511-84448955
12	타이저우 중재위원회	타이저우시 해릉구 고루남로 368번지 3층	0523-86397039
13	쑤첸 중재위원회	쑤첸시 흥택호로 156번지	0527-84358090

6. 국가지적재산권국 장쑤 종합업무 접수창구

번호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1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난징대행처	난징시 한중문거리 145번지 장쑤성 정무서비스 센터 2차 2층 D구역	210036	025-83238202
2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난징대행처 쑤저우분리처	장쑤성 쑤저우시 건장동로 178번지 쑤저우자주 창신광장 2동 302실	215000	0512-67061881

7.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업무 지방 접수창구

번호	명칭	주소	연락 전화
1	난징 상표 접수창구	난징시 포구 빈강대로 292번지 강북신구 시민센터 2층 민생보장 서비스센터 E3,E4,E5 창구	025-58195935
2	우시 상표 접수창구	우시시 양계구 영화로 28번지 101실	0510-81001852
3	쉬저우 상표 접수창구	쉬저우시 경제기술개발구 옹호남로 11번지 과기금융광장 별관 5층	0516-87787768
4	창저우 상표 접수창구	창저우시 천녕구 금수로 2번지 창저우시 정무서비스센터 1-1동 3층 A13, A14 창구	0519-85588500
5	난통 상표 접수창구	난통시 호동로 15번지	0513-85128021
6	렌원강 상표 접수창구	렌원강시 해주구 울주남로 2번지 4층	0518-85825986
7	화이안 상표 접수창구	화이안시 청강포구 간강서로 87번지	0517-89730963

번호	명칭	주소	연락 전화
8	타이저우 상표 접수창구	타이저우시 해릉구 해릉남로 315번지	0523-86882017
9	우첸 상표 접수창구	우첸시 숙성구 흥택호로 730번지	0527-84359815

8. 국가급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번호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1	중국(난징)지적재산권 보호센터	난징시 강북신구 양쯔과창센터 B동 18층	211899	025-58188731
2	중국(창저우)지적재산권 보호센터	창저우시 무진구 상무중로801번지 창연항 3동 D라인 1층	213100	0519-88010901
3	중국(쑤저우)지적재산권 보호센터	쑤저우시 쑤저우공단 금계호대로1355번지 국제과학기술원 3차 8층	215123	0512-88182712
4	중국(취저우)지적재산권 보호센터	취저우시 경제기술개발구 금용호 옹호남로 11번지 정무서비스센터 5층	221018	0516-87787286
5	중국(난통)지적재산권 보호센터	난통시 송천로 58번지	226000	0513-85361606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는 소재지의 발명, 실용신안특에 대한 사전심사, 권리보호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을 추진하며 특허 계획 및 지적재산권 운영 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한다.

9. 국가급 지적재산권 신속 권리보호센터

번호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1	중국 난통(가정용직물) 지적재산권 신속 권리보호센터	난통시 퉁주구 천강진 가정용직물 종합시장 권히위원회 4층	226315	0513-80160636
2	중국 전장 단양(안경) 지적재산권 신속 권리보호센터	전장시 단양시 운양시 고신구 과창원 A4동	212324	0511-86560018

지적재산권 신속 권리보호센터의 주요 업무는 현금

산업집취구에서 제품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디자인 권리보호 요구를 강조하는 분야에 대해 신속한 디자인 사전 심사, 신속한 권리확립, 신속한 권리보호를 통합하는 지식재산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번호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1	중국(장쑤)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난징시 건업구 한중문거리 145번지 장쑤성 정부 서비스센터 2차 2층	210036	4008869661
2	중국(쑤저우)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쑤저우시 쑤저우공단 금계호대로1355번지 국제 과학기술원 3차 8층	215000	0512-88182710
3	중국(우시)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우시시 양계구 영화로 28번지 시장감독관리국 14층	214100	0510-81009032
4	중국(창저우)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창저우시 과교성 천운과학기술빌딩 C라인 5층	213000	0519-89857966
5	중국(타이저우)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타이저우시 해릉남로 315번지	225300	0523-86606279
6	중국(난통)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난통시 승천구 승천로 106번지 1106실	226018	0513-69818199
7	중국(전장)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장쑤성 전장시 남서대로 60번지 상무A구 B라인 10층	212000	0511-80821079
8	중국(옌청)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옌청시 해방남로 138번지	224005	0515-89029413
9	난징시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	난징시 단결로98번지 양쯔과학센터B라인	210032	025-58187562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지원센터는 권리 보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지적 재산권 법률법규, 위임 권리확립 절차와 법률상태, 분쟁처리방식, 증거수집방법 등에 관한 상담지도 서비스를 조직하고 제공한다.
- (2) 지적 재산권 공익적 검토 및 교육을 조직하고 제공한다.

- (3) 지적 재산권 권리침해 판정에 대한 참고의견을 조직하고 제공하고 제공한다.
- (4) 중대한 공공 지적재산권 분쟁 또는 쟁단을 위한 해결방안 또는 제안을 조직하고 제공한다.
- (5) 공공 연구개발, 경제무역, 투자,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의 대외이전 등 활동을 위한 분석 및 사전 경보를 조직하고 제공한다.
- (6) 전시회, 상품 박람회, 대형 스포츠 이벤트, 혁신창업행사, 문화행사 등을 위한 현장 서비스 등 권리보호 지원 서비스를 조직하고 제공한다.
- (7) 지적 재산권 행정 법집행, 행정 심판, 사법 보호, 중재 조정, 신용체계 구축 등 업무를 위한 기술 지원 또는 지적 재산권 정보 활용, 문화홍보 등 업무를 제공한다.

2021